

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지만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37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4.19.
발 의 의 원 : 김지만 의원
김성태 의원
송영헌 의원
이시복 의원
이영애 의원
임태상 의원

1. 제안이유

미취업자 창업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여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

2. 주요내용

가.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 신설(안 제32조제6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「붙임 1」 참조
- 나. 관계법령 : 「붙임 2」 참조
- 다. 예산조치 : 집행부 협의완료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: 사용료의 100분의 50
2. 영 제29조제1항제19호·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: 대부료의 100분의 50

부칙(개정 2019. 4 . 조례 제 호)

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(붙임1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①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: 사용료의 100분의 50</u> 2. <u>영 제29조제1항제19호 · 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: 대부료의 100분의 50</u>

(붙임2)

관 계 법 령

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]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① ~ ⑥ (생략)

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8. 4., 2015. 7. 20., 2018. 12. 4.>

1.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: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
2. 제1호 외의 경우: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

[시행일 : 2019. 6. 5.] 제17조제7항

제35조(대부료의 감면)

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1. 16., 2016. 7. 12., 2018. 12. 4.>

1. 제29조제1항제19호·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: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
2. 제1호 외의 경우: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

[시행일 : 2019. 6. 5.] 제35조제2항

제13조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

① (생략)

② (생략)

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8. 4., 2013. 6. 21., 2014. 7. 7., 2015. 7. 20., 2016. 7. 12., 2018. 1. 9., 2018. 12. 4.>

1. ~ 20. (생략)

- 21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
 - 22.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·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
 - 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
 - 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 - 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
 - 라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
- [시행일 : 2019. 6. 5.] 제13조제3항제21호, 제13조제3항제22호

제29조(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)

-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8. 4., 2014. 7. 7., 2015. 2. 16., 2015. 7. 20., 2016. 7. 12., 2017. 7. 26., 2018. 1. 9., 2018. 12. 4.>
 - 1. ~ 18. (생략)
 - 19.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 - 가.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
 - 나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.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,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 - 다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 - 20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
 - 21. ~ 24. (생략)
 - 25.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 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
- [시행일 : 2019. 6. 5.] 제29조제1항제20호, 제29조제1항제25호